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승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발 의 자: 박승진 의원(1명)
찬 성 자: 경기문, 김규남, 김기덕,
김용일, 김원태, 김춘곤,
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
박영한, 박철성, 이민옥,
이영실, 이은림, 이종태,
임만균, 홍국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에서 시·도조례로 위임된 시장·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시장·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및 방법을 정하여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및 방법을 정함(안 제52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(관련 자료의 인계) ①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1. 이전고시 관계서류
2. 확정측량 관계서류
3. 청산관계 서류
4. 등기신청 관계서류
5. 감정평가 관계서류
6.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
7.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
8.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
9. 회계감사 관계서류
10. 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

11.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인계는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52조의2(관련 자료의 인계) ①</p> <p><u>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구획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이전고시 관계서류</u> 2. <u>확정측량 관계서류</u> 3. <u>청산관계 서류</u> 4. <u>등기신청 관계서류</u> 5. <u>감정평가 관계서류</u> 6. <u>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</u> 7. <u>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</u> 8. <u>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</u> 9. <u>회계감사 관계서류</u> 10. <u>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</u> 11. <u>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</u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인계는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</u></p>

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.